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23호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612 호 「남동구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총 무 과 2
입법예고
- 공 고 제 1613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과 11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612호

「남동구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5.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1. 폐지이유**

본 규칙은 우수한 지방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의 공무원 희망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임용코자 제정하였으나, 규칙 제정 이후 이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임용한 사례가 없으며, 공직에 대한 선호 및 수요가 증가하여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도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가 가능한 바, 실효성을 상실한 현행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동구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 453-2195, FAX 453-2189 (FAX 전송 시 유선통보 요망)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끝.

남동구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본 규칙은 우수한 지방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의 공무원 희망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임용코자 제정하였으나,
- 규칙 제정 이후 이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임용한 사례가 없으며, 공직에 대한 선호 및 수요가 증가하여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도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가 가능한 바, 실효성을 상실한 현행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남동구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남동구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남동구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조(장학생의 수) 구청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책임자가 없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학년 이상 재학생.
-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개정 2019. 11. 15.)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각1통 (개정 2019. 11. 15.)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명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11. 15.)
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 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9. 11. 15.)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권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9. 13.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90호, 2015. 7. 10.)(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규칙 제931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 -1613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5. ~ 2023. 9. 20.
3. 공고대상 : 서울37가3707 외 17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2023. 9. 5.

남 동 구 청 장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2023년 8월분)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서울37가3707	쏘나타III2.0	이*미	2023.08.30	소유자 요청
2	104하7439	K3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3.08.30	소유자 요청
3	13루7242	아슬란(ASLAN)	한*성	2023.08.29	소유자 요청
4	23하0940	스팅어	신한카드(주)	2023.08.28	소유자 요청
5	172호2626	토레스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3.08.25	소유자 요청
6	82고2680	코란도스포츠	이*욱	2023.08.24	소유자 요청
7	300조6773	A8 50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8.18	소유자 요청
8	63모4705	BMW 320d Gran Turismo Luxury WLTP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8.14	소유자 요청
9	358노5921	A6 40 TD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8.08	소유자 요청
10	179조6808	A4 40 TFS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8.08	소유자 요청
11	265더3147	A8L 50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8.08	소유자 요청
12	356노8317	A8 50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8.08	소유자 요청
13	314루6664	Q5 45 TFS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8.08	소유자 요청
14	169허4716	Tiguan 2.0TD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8.08	소유자 요청
15	296고9531	A7 50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8.01	소유자 요청
16	320부9101	A6 45 TFS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8.01	소유자 요청
17	176루2774	A6 45 TFS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8.01	소유자 요청
18	347고7143	Arteon 2.0 TDI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3.08.01	소유자 요청